

138<sup>th</sup> APR 2020

# ZOOM 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Where Is Grace Chang?**

03 ... Self-Quarantine

 **Cover Story**

05 ... 코로나19 관련 통관, 관세 지원정책 및 관련물품 HS CODE 정보

 **FTA News**

10 ... 3월부터 인도네시아 세관 원산지증명서 서류 제출 면제

 **Inside Vietnam**

12 ... 베트남 원산지 및 라벨 관리 동향

 **관세무역 관련 법령변경 소식**

16 ... 2020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관세 관련 심판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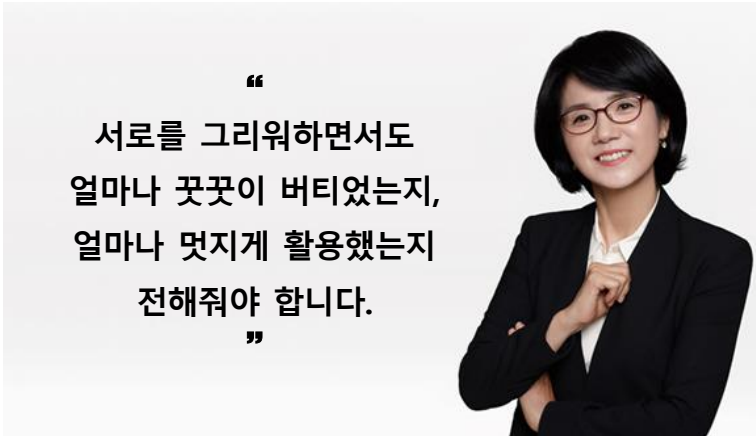
19 ...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1년 경과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당부

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 Self-Quarantine



장 승 희  
대표 관세사

봄날이 가고 있습니다.  
난분분 난분분 꽃잎은 휘날리고 있건만,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자)던' 그 맹세는 기억 없이...  
봄날은 가고 있습니다.

매우 고약한 놈이 출현하였고 전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모두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자신의 주위에 고치를 만들고 끽끔 들어갔습니다. 그 끝에 눈  
알을 매단 전자 더듬이만 길게 빼놓은 채 웅크리고 들어가있습니다. 사무실이 아닌, 교실이 아닌, 카페가  
아닌 새롭고 불편한 곳에 격리되어 이리저리 떠다니는 소식들을 보고 있습니다.

만남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이리도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보고싶은 사람들을 언제든 만날 수 있다  
는 것이 이리도 소중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처음엔 실속 없이 바쁘게 다니던 시간들을 조정할 수 있겠  
다며 은근히 반기기도 했습니다. 풍성하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받아들이고 Proactive하게 지내자며 파  
이팅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격리시키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예상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목표가  
희미해지고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감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음에 하나 둘 구멍이  
생기며 몸도 따라서 주저앉아 내립니다.

이번 달 Cover Story 는 '코로나 19 관련 통관, 관세 지원정책 및 관련물품 HS CODE 정보'입니다. FTA  
News 는 '3 월부터 인도네시아 세관 원산지증명서 서류 제출 면제'이며, 베트남 현지에서 알려드리는  
Inside Vietnam 은 '베트남 원산지 및 라벨 관리 동향'입니다. 또한 관세무역 관련 법령변경 소식은  
'2020 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이며, 관세 관련 심판사례는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1 년 경과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당부'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코로나 전(BC: Before Corona)과 후(AC: After Corona)로 규정지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고약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소하게 달라질 시대에 대해 아무도 자신있게 말하지는 못합니다. 온라인거래와 화상회의 · 원격의료 · 온라인강의 등을 바탕으로 초연결사회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만 합니다.

'人間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며 살아갑니다. **앞뒤좌우에 함께 걸어가는 수많은 이들의 삶으로써 깨닫게 되고, 삶으로써 가르칩니다.** 사람과 사람의 가르치고 배우는 연쇄 가운데서 우리는 누군가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스승입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꿈꾸고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굳건하게 버티어 나가야 합니다.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고치 속에 들어가 버티던 날들은 멋진 무용담으로 꾸며지고 전해져야 합니다.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얼마나 곳곳이 버티었는지, 버티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얼마나 멋지게 활용했는지** 전해줘야 합니다.

와이파이로 이어지는 초연결사회가 된다 해도 우리의 미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언어만이 아닌 표정과 함께, 문자만이 아닌 입술의 움직임으로, 눈빛으로도 나눔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고치 속에 머물지 않고 밝은 햇살 아래서 따뜻한 만남을 만들어야 합니다. 봄날은 갔어도 우리 다시 만날 때는 서로 얼싸안고 Bisou\*\*를 나누어야 합니다.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말씀대로,

.....

**Better days will return.**

**We will be with our friends again,**

**We will be with our family again,**

**We will meet again.**

건강하시고 잘 버티어 내시기를... 일간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영복 (1996, 2016). 『나무야 나무야』, 주식회사 돌베개

\*\* Bisou: 뽀에 하는 가벼운 뽀뽀





*Cover Story*

# 코로나19 관련 통관, 관세 지원정책 및 관련물품 HS CODE 정보

## 주요 물품 HS CODE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국내외 경제상황과 사회적 불안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상황이 빠르게 회복되고 개선되길 바라며, 코로나 19 관련물품의 HS CODE정보와 주요 관세 행정 지원방안에 대하여 정리, 안내합니다.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수요가 많은 물품의 HS CODE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 중 호 관세사  
jhshin@shcs.kr

**[ PROFILE ]**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FTA 컨설팅
- 관세환급
- 기업심사

| 연번 | 품명                        | 영문명, 통상명칭   | HSK   |
|----|---------------------------|---|---|
| 1  | 손소독제                      | Disinfectants (Hand sanitizer, Hand antiseptic 등으로도 유통)   | 3808.94-0000                                  |
| 2  | 손세정제                      | Organic surface-active products and preparations for washing the skin (Hand cleaner, Hand wash 등으로도 유통) | 3401.30-0000                                  |
| 3  | 보건용, 수술용 마스크              | Face mask, Dust mask, Mask  | 6307.90-9000                                  |
| 4  | 마스크 필터(원단)                | Interlining, Melt brown, Dust mask filter, Nonwoven filter  | 5603  |
| 5  | 마스크 필터<br>(특정형상으로 가공된 상태) | Mask filter   | 6307.90-9000                                  |
| 6  | 의료용방진복<br>(부직포재질)         | Protective clothing, Working clothes, Nonwoven garment, Nonwoven clothes                                | 6210.10-2000                                  |
| 7  | 라텍스재질 장갑(고무)              | Latex Gloves  | 4015.11-0000<br>(외과용)<br>4015.19-0000<br>(기타) |
| 8  | 의료용 고글                    | Protective goggles  | 9004.90-9090                                  |

※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물품에 대해서 배포한 의견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정확한 HS CODE는 상이 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 및 관세 세정 지원

### ① 구호용 마스크 수입시 수입요건확인 면제

- 마스크 수입시에는 의약품법상 절차에 따라 사전 신고, 품목허가 및 매 수입건마다 한국의약품 수출입 협회에 보고를 사전에 득하고 나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러한 수입 사전 절차를 대폭 생략하여 사용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식품의약품 안전처(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에 제출하면 요건 면제 승인을 절차를 통하여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 대상 및 시행기간 : 구호용 및 이에 준하는 마스크(의약외품), ~ 2020. 6. 30.
- 추천기준 : 구호용 및 이에 준하는 것
  - (예시 ①) 해외 본사 등에서 국내지사 직원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비상업적 목적)
  - (예시 ②) 기부(의료기관, 기부단체 등) 등의 목적으로 반입(비상업적 목적)
- 자세한 업무 처리 절차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관세청 공지사항 : <http://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

### ② 구호용 마스크 및 마스크 제조용 MB필터 부직포 수입시 할당관세(무관세) 시행

- 정부는 '20.3.17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및 MB필터(멜트 블로운 부직포)의 관세율을 '20.6.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래의 규격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입 전량에 대하여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시행기간 : 2020.3.18~2020.6.30
- 할당관세 품목 및 세율 변경내역

| 품목(HSK)   | 규격                                     | 관세율(%) |       | 적용<br>수량 |
|---|--|--------|-------|----------|
|   |  | 기본세율   | 할당관세율 |          |
| 방직용 섬유제품<br>(6307.90.9000)                                | 수술용·보건용<br>마스크                         | 10     | 0     | 전량       |
| 부직포<br>(5603.12.1000)<br>(5603.12.9000)<br>(5603.92.0000) | 멜트 블로운<br>(Melt Blown)<br>부직포 필터<br>원단 | 8      | 0     | 전량       |

### ③ 특별재난지역 대구·경북 수출입기업, 세정혜택 지원

-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 소재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정지원을 2020년 3월 18일부로 실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납기연장, 분할납부)** 대상기업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관세조사 보류 및 연기)**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보류하였으며, 이미 조사 중인 기업이라면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음
- **(관세환급 지원)** 서류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에도 환급금 수령 가능
- **(체납기업에 대한 통관 허용)** 체납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
- 상세한 내용은 대구본부세관 납세심사과(053-230-5315) 및 각 지역 본부세관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④ 코로나19 관련 긴급 항공 운송물품 관세 인하 지원

- 정부는 2020년 2월 20일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산 부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자동차 핵심부품에 대하여, 항공 운송비용(高)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低)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관세 =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등) × 관세율

- 적용 기간 : 수입신고일 기준, '20년 2월 5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 「주의」로 하향 조정되어 시행되는 날까지
- 대상 물품 :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HS 8544.30-0000)
- 신고방법 및 적용
- 운송수단만 변경(선박→항공기)하였을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전 선박으로 수입하였을 당시 신고하였던 선박운임 적용하여 신고
- 거래처가 변경되어 수출국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수출국의 선박운송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율표 수입신고시 관세사 기재란에 "고시 제12조제1항제13호 항공운임특례 적용" 기재



## 긴급수급조정조치

상기 지원책 외 코로나19 관련하여 부족한 국내 수급 문제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수출을 아예 금지 (보건용 마스크)하거나 제조업체에 한하여 생산량 중 일부 수량만 수출을 허용(손소독, 세정제)하도록 “긴급수급조정조치”가 내려진 상태 입니다. 지원책 외 코로나19 관련 정부 조치의 일환으로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과 기업들의 상황이 하루 빨리 개선되길 기원합니다.

## 참고자료 및 출처

- 관세평가분류원 COVID-19 관련 물품 품목분류 안내
- 관세청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FTA News*

## 3월부터 인도네시아 세관 원산지증명서 서류 제출 면제

한-인도네시아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시스템(EODES) 전면 시행

한-인도네시아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시스템(이하 EODES)이 3월1일부터 개통된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수입 시에 종이 원산지증명서(이하 C/O)를 인도네시아 세관 당국에 제출 할 필요가 없게 된다. 다만, 국내 수출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홍혜현** 관세사  
hhhong@shcs.kr

**[ PROFILE ]**

- 신한관세법인
- FTA 컨설팅
- 수출입 통관
- 검역/요건
- 관세환급

## 기대효과

### 물류 비용 절감

이전에는 FTA 특혜관세 신청 시 C/O 원본제출이 필수였다. 따라서 국제우편 또는 특송을 통한 C/O 송부 및 수입국 세관의 C/O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로 물류지체가 빈번히 발생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이번 한-인도네시아 간 EODES 구축으로 관세 및 물류비용이 연간 56억 상당 절감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와의 C/O관련 통관애로는 원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수출기업 해외시장 진출 촉진 및 FTA 활용 지원 효과

관세청은 정부 신남방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아세안 전체 GDP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교류, 협력 증진을 목표로 노력해왔다. 한-인도네시아 양국간 EODES 구축은 한-중국 간 EODES 구축 이후 두 번째이자, 아세안 등 신남방국가와는 최초로 도입한 사례로 우리기업의 인도네시아 FTA 활용 확대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전망 및 시사점

관세청은 베트남, 태국 인도 등 다른 신남방국가와의 EODES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한-아세안 국가(10개국) 및 인도와의 EODES 구축시, 관세, 물류비용절감 등 연간 749억원의 효과가 발생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EODES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FTA 특혜관세 혜택의 필수 제출 서류인 원산지 정보를 협정 상대국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교환하는 시스템



*Inside Vietnam*

# 베트남 원산지 및 라벨 관리 동향

## 원산지 및 라벨 관리 강화

베트남 관세총국은 작년 8월 원산지 및 라벨(원산지 표기 포함) 관리감독 강화와 관련된 지침을 베트남 전역의 관세국에 안내했습니다. 또한 최근 원산지 및 라벨 관리 감독에 대한 공문을 발행한바 있습니다. 베트남 관세총국은 본격적으로 원산지 및 라벨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관련공문: 755\_TCHQ-GSQL(원산지 및 라벨 조작 및 위조 방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763\_TCHQ-PC(불법적인 라벨에 관한 처리 지침)]

이에 현행 베트남의 원산지 및 라벨 관리 관련 규정과 공문상 지침을 간략히 안내 드리오니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 및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실** 관세사  
sh.park@shcs.kr

**[ PROFILE ]**

- 신한베트남관세법인
- FTA 컨설팅
- FTA 원산지 판정
- FTA 원산지 증명
- 심사대응 및 관세자문

**최근 발행된 공문상 원산지 및 라벨 감독 주요 내용**

베트남 관세총국은 중국, 대만, 한국 등에서 수입된 품목이 미국, EU, 캐나다 등에 수출되는 경우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특히 아래의 행위에 대해 베트남 세관 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완전조립물품(CBU)를 수입하거나 “간단한 조립(Simple Assembly)” 후 베트남산 물품으로 표기해 수출하는 경우
- 수입물품과 베트남 내 생산물품을 혼합한 뒤 베트남산 물품으로 표기해 수출하는 경우
- 라벨(원산지 표기 포함) 없이 수입된 물품 또는 포장지상 라벨이 부착돼 수입되는 물품
-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된 라벨이 부착돼 수입되는 경우

※ 관련 공문상 지침은 원산지 판정의 적정성과 원산지 표기 오류 사례를 관리 감독하고자 하는 것으로 외국물품이 베트남산 물품을 둔갑되는 경우와 단순 가공을 거쳐 베트남산으로 표기돼 수출되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됨.

**원산지 및 라벨링 관리 관련 처벌·행정 조치**

**원산지 판정 및 검증을 위한 부정확한 정보 제공**

- 원산지 판정 또는 검증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2000 만 동 내지 3000 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됨.

**원산지 조작으로 인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오류 시**

- 허위 문서 또는 조작된 신고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6개월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정지 처분
- 원산지증명서 발급 당국이 사후검증을 함에 있어 원산지 판정과 관련된 적절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못하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취소 및 6개월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정지 처분

###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수출물품 또는 수입물품

- (과태료) 물품의 가액에 따라 500 만 동부터 5000 만 동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물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 가액에 상응하는 과태료 부과
- (행정 처분) 해당 품목은 재수출되거나 베트남 내에서 폐기되어야 함.

### 규정상 명시된 필수기재항목이 명시되지 않은 라벨이 부착된 경우

- (과태료) 물품의 가액에 따라 50 만 동부터 3000 만 동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물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 가액에 상응하는 과태료 부과
- (행정 처분) 통관 완료 전까지 라벨이 수정되어야 함.

※ 필수기재항목: 라벨링 규정상 필수기재항목이라 함은 품목명, 회사명과 주소, 원산지, 시행령 43/2017/ND-CP Appendix I 에 명시돼 있는 품목별 필수기재항목임

## 업체들의 점검 사항

이러한 베트남 관세총국의 지침과 관련해 업체들은 아래의 사안을 중점적으로 점검 및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원산지 판정의 적정성

- 원산지 판정의 목적(FTA 원산지증명서 발행, 일반 원산지증명서 발행, 원산지 표기 목적 등)에 맞춰 관련 규정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되 특히 관련 규정상 명시된 충분가공원칙에 부합되는지를 반드시 점검
-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기 목적으로는 베트남 원산지 규정에 따라 판정해 표기돼야 하되, 수출물품의 원산지 표기에 있어 베트남(수출국)과 수입국 간 원산지 판정기준이 상이한 경우에는 수입국 기준으로 표기가 가능한지에 대해 사전에 유관기관과 확인

※ 충분가공원칙: 단순한 조립 등과 같은 불인정 공정 이상의 공정을 수행할 것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 및 협정마다 불인정 공정의 범위가 상이하며 "단순" 작업의 범위가 상이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함. 특히 최근에는 "단순 조립"의 범위에 대해 업체와 관세 당국간의 이견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판단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

## 수출입 물품의 라벨 확인

- 수입물품의 경우 베트남 라벨링 규정에 따라 필수기재사항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표기(라벨 사이즈, 색상, 언어 등)가 되었는지를 미리 점검
- 수출물품의 경우 구체적인 라벨링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관련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해 유관기관과 미리 확인 후 라벨 준비 필요

## 결론

최근 베트남 관세총국에서는 원산지 둔갑 및 우회수출 등의 이슈 등과 관련해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 및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기의 적정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기가 베트남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됐는지를 확인하고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거나 원산지를 표기함에 있어 원산지 기준이 충족됐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하며 특히 충분가공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미리 점검 및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원산지 표기의 적정 여부에 대해 세관과의 이견 발생으로 관련 물품을 세관 관할 창고로 회수하거나 물품의 이동을 중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 이러한 이견이 조율될 때까지 업체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더욱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검토를 하되 규정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사전에 유관기관과 확인해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 본 내용은 베트남 현지 배포 자료를 근거로 신한관세법인이 구성, 재정리한 것으로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 베트남 소식 관련 상세 문의가 있는 경우 다음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신한베트남관세법인

박은실 법인장: +84-(0)24-7300-8630 [VN], +82-(0)70-5222-7280(KR) / [espark@shcs.kr](mailto:espark@shcs.kr), [scv@shcs.kr](mailto:scv@shcs.kr)

## 신한관세법인

최대규 이 사: +82-(0)2-3448-1181 [KR] / [dkchoi@shcs.kr](mailto:dkchoi@shcs.kr)

박성현 관세사: +82-(0)2-3448-1181 [KR] / [sh.park@shcs.kr](mailto:sh.park@shcs.kr)



관세무역 관련 법령변경 소식

# 2020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 주요 개정사항

###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세액경정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

|       |  |  |
|-------|--|--|
| 추진 배경 | 품목분류 변경으로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FTA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수입자 권익 보호        |  |
| 주요 내용 |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이 연장됨 |  |
|       | 변경 전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
|       | 변경 후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또는 해당 납세고지를 받은 날 부터 45일(잠정, 시행령 개정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이내 |
|       | 시행일  | 2020년 4월 1일  |

※ 품목분류 변경 이외의 사유로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적용(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신영희** 관세사  
yshin@shcs.kr

[ PROFILE ]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검역/요건
- 품목분류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이 동일한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 허용**

|              |   |                 |
|--------------|---|-----------------|
| <b>추진 배경</b> | 관세율이 동일한 경우, 적용 세율의 종류를 수입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입자의 선택권 보장 및 권리구제 |                 |
| <b>주요 내용</b>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이 동일한 경우, 수입자가 적용세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됨 |                 |
|              | 수입물품에 대한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 적용방법                               |                 |
|              | <b>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적용세율이 상이한 경우</b>                            | 낮은세율 적용         |
|              | <b>양자가 동일한 경우</b>   | 수입자가 적용세율 선택 가능 |
|              | <b>시행일</b>  | 2020년 1월 1일     |

**신고납부 및 납세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을 수입자 선택사항으로 변경**

|              |  |                                    |
|--------------|--|------------------------------------|
| <b>추진 배경</b> |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을 수입자의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법적 혼선을 줄이고 수입자 권리구제를 도모함 |                                    |
| <b>주요 내용</b> | 원산지 증빙서류 오류로 인하여 수입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                                    |
|              | <b>변경 전</b>  |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 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              | <b>변경 후</b>  |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 여부 선택가능, 미이행시에도 과태료 없음 |
|              | <b>시행일</b>   | 2020년 1월 1일                        |

## 관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              |   |   |
|--------------|---|---|
| <b>추진 배경</b> | 비슷한 제도를 중첩운영하여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 지연에 대한 행정상 제재 일원화                                      |   |
| <b>주요 내용</b> |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 |   |
|              | <b>현행</b>   | 납부불성실가산세 <sup>㉔</sup> [미납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날 ~ 수정 신고일 또는 납부고지일) x 1일 0.025%]와 가산금[미납세액 x 3% <sup>㉕</sup> + 매 1개월마다 월 0.75% <sup>㉖</sup> ] 별도 운영 |
|              | <b>개정</b>   | 납부지연가산세로통합[미납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 x 1일0.025% <sup>(㉔+㉖)</sup> +3% <sup>(㉕)}</sup> ]  |
| <b>시행일</b>   | 2020년 1월 1일   |   |

## 기타 개정사항

###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부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위해 물품 적발 등의 공익목적을 위해 선별적으로 검사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

### 통고처분 면제가능

경미한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및 범칙금 부담 능력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됨

※ 면제기준은 범칙금 30만원(추징금·물수품 가액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정하며, 통고처분의 면제 여부는 관세 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됨

###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과

구매대행자가 구매자에게 관세를 받은 후에 불법행위(예: 수입신고인에게 허위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등)를 통해 이를 편취한 경우에는 구매대행자에게도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



## 관세 관련 심판사례

#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1년 경과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당부

###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17.11.27.부터 2018.3.19.까지 중국산 냉동 어류를 수입하면서, 제0307.43-2010호로 조정 관세율 22%를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원산지증명서가 있었으나 조정 관세율과 협정세율이 22%로 동일하여 조정관세율 적용).
2. 관세청장은 2019.3.7. 어류의 몸통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제0307.43-2010호에서 제0307.43-2090호로 변경고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위 변경고시를 근거로 2019.3.25. 및 2019.4.4. 쟁점물품이 제0307.43-2090호로 분류됨을 전제로 한-중 FTA 협정세율(17%)의 사후적용을 신청하였으나,
4. 처분청은 2019.4.10. 및 2019.4.17.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한-중 FTA 협정관세 사후 적용이 신청되었기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거부하였다.



조 나 현 관세사  
nhcho@shcs.kr

[ PROFILE ]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검역/요건
- 품목분류

### 쟁점

쟁점물품에 대한 한-중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17.11.14. 쟁점물품을 제0307.43-2090호로 품목분류하여 한-중 FTA 협정관세율 17%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통관지세관장이 2017.11.22. 쟁점물품이 조정관세율 22%가 적용되는 제0307.43-2010호에 해당된다는 분석결과를 통지하자, 청구법인은 2017.11.27. 이를 제0307.43-2010호로 품목분류하고, 부족 관세를 정정신고. 납부하였다.
2. 관세청장은 2019.3.7. 어류의 몸통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냉동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제0307.43-2010호에서 제0307.43-2090호로 변경고시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9.3.25. 등 위 변경고시에 따른 품목분류를 근거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어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4. 관세법 제5조 제1항에서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에 「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협정관세의 세율과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이 같다면, 수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민원회신(자유무역협정 관세이행과, 2019.1.23.)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통관지세관장의 수리 후 분석결과 통지는 품목분류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므로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조세심판원의 결정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 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통관지세관장의 수리 후 분석결과 통지는 원칙적으로 품목번호를 결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협정관세 적용 신청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협정관세율과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이 같은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는 등 추가 요건이 필요하기는 하나,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그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평론

본 사례는 처분청이 신뢰보호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납세자를 구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납세자는 통관지세관장의 분석결과를 신뢰하여 해당 세번을 적용, 관세를 납부하였으나, 이 결정을 번복하는 변경고시가 1년을 초과하여 고시되었다는 이유로 FTA 협정을 거부당한 것은 부당한 결정이다.

실제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오류에 의한 사후협정 기간 초과를 이유로 FTA 협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를 반영하여 2019년 12월 31일자로 「FTA특례법」이 개정되었다. 「FTA특례법」 제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 제3항에서는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품목분류 변경시에도 원산지증명서 구비와 협정 적용 신청 등 신속하게 대처하여 협정 배제로부터 구제 받기를 기대한다.

#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